

■ 판례 동향

특허수수료 부과고지의
처분성 및 무효 여부에
관한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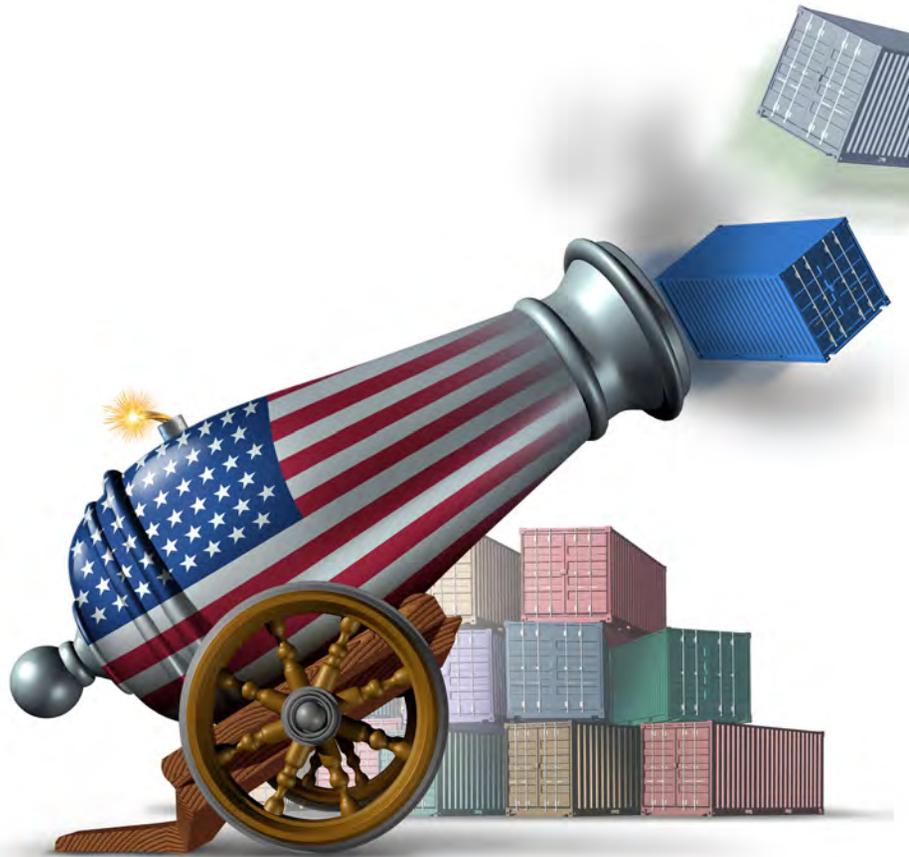
■ 품목분류 동향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드론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벼랑 끝’ 한국 대표산업, ‘엎친 데 덮친 관세’에 초긴장 릴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홍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3월 10일(통권 제2121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벼랑 끝' 한국 대표산업, '엮힌 데 덮친 관세'에
초긴장 릴레이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중국에서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용 포장 후
재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29** 질의응답사례
전동스쿠터의 HS Code

판례동향

- 31** 관세판례해설
특허수수료 부과고지의 처분성 및 무효 여부에
관한 판례

품목분류동향

- 48** 품목분류해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드론의 품목분류
- 63** 품목분류 M.A.P
홉(Hop) 분류 사례
- 67** 세번 바로잡기
남성용 방한복
- 69** 상식 밖의 상품학
“불 나면 안 열려” 해외 직구 도어록 안전주의보

최신개정법령

- 72**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73** 공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 79** 입법예고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벼랑 끝' 한국 대표산업, '엎친 데 덮친 관세'에 초긴장 릴레이

기술 경쟁력·통상환경 대응·공급망 안정성 핵심과제 산적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업계 전문가들이 3월 6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 주력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 모였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3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은 가운데 열린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은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2024년 기준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의 최혜국 대우 실행세율(MFN)은 13.4%로 미국(3.3%)의 약 4배이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FTA 협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암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6.9%에 달한다. 특히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이 맞물리며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도 최근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기업은 고부가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며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단국대 경영대학원장 정연승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의 요인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핵심과제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국내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 요인으로

끊었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요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꼽혔으며,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나왔다.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가 위기 요인,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제3의 성장곡선(S-curve)’을 그릴 중요한 기로라는 시각도 있다. 맥킨지앤컴퍼니의 엄수형 파트너는 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라고 주장했다. 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재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등 혁신적인 운영을 꾀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보조금 문제와 얽혀 있는 반도체 업종도 이슈다. 이미 작년 12월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발족 이후 처음으로 K-반도체 위기극복 방안이 담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미국 공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약속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특별위원회 또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구 개발 추진, 인재유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꼽은 바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가칭) 도입 등 특단의 정책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실장은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고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또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국내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도 전 분야에 걸쳐 제도의 경쟁력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경협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31.0%로 ‘호전(11.0%)’이라고 답한 기업보다 20%p 이상 많았다. 자금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환율(24.3%)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23.0%), 높은 차입 금리(17.7%) 등을 꼽았으며, 정책 당국에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노력(34.3%),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25.7%)를 바란다고 답했다. | 김성은 기자 |

국내 금시세 급등에 밀수도 덩달아 급증 … 관세청 집중 단속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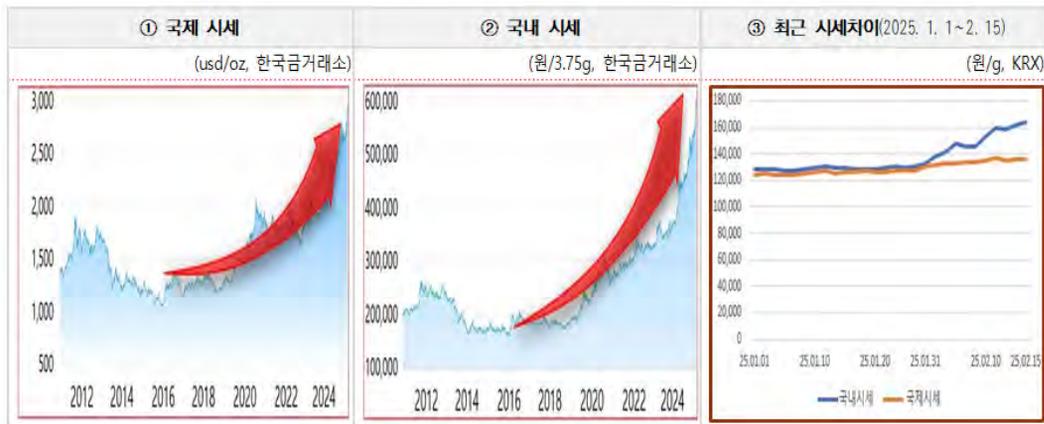
공짜 해외여행에 혹해서 시작한 단순 운반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최근 국내 금 시세가 폭등해 금 밀반입과 국내 우회를 통한 밀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월 5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 원 ~ 2,700만 원(10 ~ 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홍콩과 비교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금 밀수와 관련해 안전 국가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자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 국내외 금 시세차이 ●



출처 : 관세청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금괴 밀수 적발이 대폭 증가했었다. 그러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세가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밀수입 적발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이 분석한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로 나뉜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 팔찌·목걸이 등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날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 사례도 공개했다. 올해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홍콩·대만으로부터 금괴 1kg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 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검거된 여행자가 6명에 달한다. 한 중국인은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은으로 도금한 부처상 금제품 5개(4.1kg, 7억 4,000만 원 상당)를 벨트와 신체에 은닉해 밀수했다. 또 목걸이 형태로 제작한 골드바 1개(0.5kg, 8,000만 원)를 신변에 은닉한 사례, 고리 형태·캐리어 바퀴 모양으로 만든 금제품을 캐리어 바퀴 안쪽에 은닉해 밀수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올해 1월에는 홍콩에서 출발한 여행자에게서 인천공항 출국장(환승)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85kg, 74억 원 상당)를 넘겨받아 신체에 은닉한 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이 검거됐다. 피의자 총 39명은 일본 여행경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모집 공고에 현혹돼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금괴 적발 사례 ●



(왼쪽부터) 목걸이로 가장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안쪽에 은닉한 고리 형태 금제품, 은으로 도금한 부처상 금제품,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 페이스트(출처 :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무료항공권, 공짜 여행, 일정 수익 분배 등을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하고 입국 시 세관 직원들이 매수돼 있다는 거짓말로 안심시키는 등의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관세청은 우범 여행자와 화물 대상을 강화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홍콩·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무료 항공권 제공과 같은 말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한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직원뿐 아니라 이러한 금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시민은 반드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밀수 신고 > 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지방 구석구석 발로 뛰며 관세 애로 해결 돕는다

3월 5일 총북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주요 지역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 개최

3월부터 두 달간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가 진행된다.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관세 애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업종별·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대상 미국 신정부 관세조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릴레이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관세 및 통상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대체 시장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에는 통상현안 모니터링, 유망시장, 비상대응 지원 사업 등을 종합한 정보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시장 정보가 제공되고, 별도로 1:1 수출 애로 컨설팅 기회도 제공해 기업들의 관세 애로 해결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한다.

설명회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총 9회 개최된다. 상세 일정은 3월 5일 총북을 시작으로 강원(12일), 인천(14일), 울산(24일)이며, 4월은 전북·경기북부(2일), 대전·세종·충남(3일), 광주·전남(14일), 경기·부산(16일), 경남(24)일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수출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 및 해외 모든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서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관세 대응 통합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KOTRA에 신설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있으며, 멕시코,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美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수출 현장의 통상 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방 구석구석을 찾아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설명회 공통 프로그램(안)●

연 번	시 간	내 용
1	20분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 및 진출 유망분야
2	20분	주목해야 할 유망시장
3	20분	KOTRA 비상대응 지원사업(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등)
4	40분	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5	10분	Q&A 및 1:1 수출애로 컨설팅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 신설 ··· 반도체·AI 등 산업 전반 폭넓게 지원

3월 중 관련 법·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제출하고 절차 마무리되는 즉시 기금 출범 계획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된다. 지원 대상의 폭도 넓혀 대기업 포함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월 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자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등의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에서도 선·후발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지난 1월 20일 美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국의 고율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반도체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나 반도체 외 산업의 경우 초저리대출 등 자금지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으며, 금융규제 상 여신한도 및 위험가중치 부담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도 곤란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매칭이 높은 정책펀드는 투자기간이 충분치 않아 기술·초장기투자 부족으로 인내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기존 프로그램 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마약 압수량 증가, 유통방식 변경 대응 '2025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및 입국자·특송 마약 단속 강화

국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이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마약류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마약류대책협의회, 민생범죄집중검회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정부 최초로 올해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 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을 총괄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

마약류 사범은 20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2만 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압수량은 2022년 804.5kg에서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이며, 그중 밀수량은 2022년 624kg, 2023년 769kg, 2024년 787kg 수준이다. 국경단속을 피하고자 마약류 밀수기법도 다변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마약류 중점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신설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2월 중으로 각 공항세관의 마약 우범여행자 선별 현황을 파악하고 6월에는 세관별 여행자 검사 인력을 고려해 AI 선별 비중을 확대한다. 마약류 밀반입 패턴이 대규모 공항에서 소규모 공항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대량 밀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해상 마약밀수는 우범국가를 경유하는 선박 및 화물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차단한다. 매월 주요 마약 생산·소비국가(항만)를 경유하는 선박의 이동경로와 마약밀수 동향 등을 반영해 우범선박을 선별해 승선검사를 실시한다. 작년 11월 부산세관에 도입한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11월 중으로 시범운용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컨테이너 내부 공간, 팔레트 등 마약 은닉이 가능한 공간은 차량형 검색기, 컨테이너 검색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검사한다.

국내 마약류 불법유통 수사 정보와 연계해 우범 수하물은 긴급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온스캐너, 간이시약, 라만분광기 등 장비 사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검사를 강화하며 관리대상화물 마약류 적발 코드를 신설한다. 작년 2월 구축한 항공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은 올해 12월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법무부와 관세청은 우범노선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전 핸드 캐리 수하물 X-ray 전수검색 및 신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해 일 1회, 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컨테이너 검색장비는 교체해 통관감시장비의 효율화를 꾀한다. 작년 12월 부산신항에는 새로운 기술과 건축방식을 적용한 컨테이너 검사센터가 구축된 바 있다. 앞으로도 컨테이너 검색기를 적시에 교체 및 도입해 장비 성능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공항·항만 검색을 통과한 우편물에 은닉돼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국제우편물의 단계별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세관 통과 후 전국으로 배송되기 전 마약류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세관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한 뒤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2차 검색으로 해외 마약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의 협의를 거쳐 마약류 X-ray 판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부 지원방안과 일정을 확정 짓기로 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센터 내에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을 실시해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 및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엔 수립한 20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어려운 무역보험·해외 미수채권 회수 K-SURE를 이용하세요

전문인력 파견해 보험신청 관련 컨설팅 및 저비용으로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개시

무역보험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보험금 신청절차를 돕는 ‘보상도우미’ 컨설팅 서비스가 개시됐다. 또 중소 포워더가 수입국 화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저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3월 5일 무역보험금 청구 관련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3월부터 ‘보상도우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SURE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사업인 ‘Trade-Sure’ 컨설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서류관리 시스템 부재로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이해가 낮고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 기업에는 무역보험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보상절차 설명 및 필요서류 준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SURE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초보기업의 경우 수입자 대금 미결제 시 K-SURE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보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며, “보험금 청구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K-SURE 컨설팅 홈페이지(tradesure.ksure.or.kr) 또는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포워더들이 수입국 화주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대금 회수지원 서비스도 3월부터 개시됐다.

이를 위해 K-SURE는 3월 4일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IFFA)와 포워더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KIFFA 회원사로 등록된 포워더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대금을 저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KIFFA 추천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회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채권회수 성공 시 K-SURE가 수취하는 수수료율을 기존 2%에서 1%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등 불안 요인이 이어지며 해외 미수채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해외채권을 회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수출기업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제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美 USTR 통상의제 살펴보니 ··· 트럼프 “양자통상체계에 집중”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 명시되지 않아 재협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3월 3일(현지 시간) ‘2025년 통상정책 의제 및 2024년 연례보고서’를 美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채택 배경과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일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번 통상정책 의제에는 중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며 고유한 경제 과제로 중국에 특정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매체는 “USTR은 美·中 1단계 무역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폭넓게 검토해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자통상체계에 집중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이 체결한 FTA에 제3국이 무임승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WTO가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비시장정책과 관행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3월 5일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본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을 발간하며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설명했다. 우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산업 등은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모든 경제협정을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FTA 역시 재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평양 한창완 변호사는 “보고서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주요 성과로 언급된 반면 마찬가지로 트럼프 1기 당시 수정 체결한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청정산업, 배터리 등 여러 국내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지원이 보조금으로 평가돼 무역구제조치나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기업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USTR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중국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언급하며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월 27일 워싱턴무역협회(WITA) 주관 웨비나에서 USTR 출신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국제경제법 연구소 공동소장은 “관세 부과 정책에 유리한 특정 사례만 강조할 뿐 무역구조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전 USTR 부대표 존 베르노고문은 “현재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요새화(Fortress America), 즉 고립주의 접근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USTR 대표 등 통상당국자를 만나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 김성은 기자 |

한·ASEAN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

글로벌 사우스 핵심 ASEAN과 경제 협력 확대 본격 시동

한국과 ASEAN 간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지역인 ASEAN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ASEAN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ASEAN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ASEAN-ROK Think-tank Dialogue on Economic and Trade Policy)’ 키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작년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월 7일 개최된 키오프 회의에서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ASEAN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ASEAN의 성장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한국과 ASEAN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ASEAN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 행사가 개최됐다. 산업연구원이 ASEAN 경제정책 연구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센터는 ASEAN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ASEAN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ASEAN의 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ASEAN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對ASEAN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인니 등 주요 협력 국가와의 긴밀한 정부 간 소통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지역인 ASEAN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식약처, 검사 대상 담배 유해성분·시험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검사 대상 유해성분·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 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의견은 5월 7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국산 딸기 브라질로 수출 … 중남미 국가 중 처음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딸기가 브라질에도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브라질과 국산 딸기 수출 관련 검역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고 3월 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했고, 약 8년 간의 협상 끝에 2월 26일 브라질 검역 당국이 한국산 딸기 수입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딸기묘를 심기 전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브라질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다. 매년 4,000여 톤의 딸기가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된다. 작년 국산 신선 딸기의 수출액은 약 6,753만 달러다.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싱가포르가 1,794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태국 1,637만 달러, 홍콩 1,201만 달러, 베트남 695만 달러, 말레이시아 409만 달러, 미국 58만 달러 등이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 처음”이라며,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2월 수출, 플러스 전환과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 달성

수출 526억 달러, 수입 483억 달러로 수지 43억 달러 흑자 기록

올해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했던 우리 수출이 2월로 들어서며 컴퓨터·무선통신 등 IT 분야와 자동차·바이오헬스 4개 품목의 선전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은 2022년 514억 6,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 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 달러를 기록하며,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한 품목은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컴퓨터·무선통신 등 IT 분야 2개 품목과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총 4개 품목이었다.

컴퓨터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흐름을 보이며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완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출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42.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3개월간 이어진 수출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중심으로 16.1% 증가하며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지역은 9대 주요시장 중 4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둔화세를 보였으나 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96억 달러 대비 보험수준인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對미국 수출은 9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3대 수출시장인 對ASEAN 수출은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역대 2월 중 2위 실적에 해당하는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對인도 수출은 18.6%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對중동 수출도 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2월 수입은 에너지 분야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 등 비에너지 분야는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48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억 5,000만 달러 증가한 43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는데 특히 2월 흑자 규모가 1월 적자폭(△19억 달러)을 크게 초과하며 1~2월 무역수지 누계도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美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관세청이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파악한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무협, 2025년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개 국적선사와 세계 22개 주요 노선에 대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HMM을 통해 미주·유럽 14개 노선에 매주 1,000TEU 규모의 선복을 마련했으며, 고려해운 등 8개 선사를 통해서도 인도·동남아 8개 노선에 매주 420TEU의 선복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미주·유럽 노선에서 안정적으로 선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HMM과의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 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해상운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주·유럽 노선은 반기별, 인도·동남아시아 노선은 분기별로 우대운임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용품 가격 부풀려 신고한 수입업자 검거

서울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신고한 5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품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인용 보행기 10여 종 약 2만 8,000개 제품의 수입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1.3~2배 부풀려 신고했다. 이들의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친 노인장기요양보험제정 피해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사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또한 2배가량 부풀려져, 그 피해금액은 약 3억 6,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가격 조작행위에 협조한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공유하는 등 공단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용 포장 후 재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중 FTA
질문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headlamp)를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 제도

(1) 개요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대부분 협정은 기관발급·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없고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 발효된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FTA 등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의 원산지증명 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증명 제도는 크게는 기관발급 그리고 자율발급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식을 합쳐 우리는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의 주제인 한·중 FTA의 경우 각 당사국이 정하는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 한·중 FTA 부속서 3-다에 통일서식으로 규정돼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한·중 FTA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우리나라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말하고, 중국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를 말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통일서식으로 해당 양식에 의해서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CPIT에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심 2022관0114(2022. 10. 18.)에서는 수입신고 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취)된 건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작성 및 발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에서 발급 가능하다.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구분		회원	비회원
서명등록		무료	55,000원
원산지 증명서	비특혜	일반	9,000원
	특혜	관세양허	1,900원
		자유무역협정 (FTA)	무료
국내산 원산지증명		33,000원	66,000원
상업송장 등 기타 무역증명서		무료	9,000원

	구분	회원	비회원
까르네	5천만 원 미만	132,000원	220,000원
	5천만 원 이상	143,000원	231,000원
	분실 및 재발급	55,000원	55,000원
	1개국 추가 / 분할통관	11,000원	11,000원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유니패스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발급 수수료 존재 여부와 별개로 상공회의소의 발급 건이 더 많다.

관세연감(2024)에 따르면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52만 9,252건 발급됐으며, 발급 비율은 세관 약 33%, 상공회의소 약 67%였다. 한·중 FTA의 경우 총 20만 9,905건의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됐고, 그중 세관은 약 38.8%(8만 565건), 상공회의소는 약 61.2%(12만 8,496건)의 발급 비율을 보였다. 전체 발급 건의 비율과 비교하면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중 FTA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부속서 3-다(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1번란(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부터 제14번란(Certification, 증명)까지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의 Overleaf Instruction(뒤쪽 설명)에서는 제1번란부터 제14번란까지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도 이를 반영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생산자, 수하인의 정보뿐 아니라 운송 수단 및 경로, 물품명세(품명, 수량, 총중량, 원산지기준, HS Code 등) 등의 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해당 란의 작성은 필수인 것도 있고 선택인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 명세에 대해 작성하는 제6번란부터 제12번란까지의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다만, 생산자 정보를 작성하는 제2번란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제4번란의 운송 수단 및 경로(Means of transport and route) 또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데, 그 이유는 “as far as known(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월 중국 상해세관에서 환적(포항 → 부산)으로 인한 선명 불일치를 이유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4란(운송수단 및 경로)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의 하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3국 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며,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3. 질문 & 답변에 대한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해당 질문 & 답변 사례는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headlamp)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산’에 대한 판정은 FTA 활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FTA는 상대방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으로 수입할 때 중국산, 한국으로 수입할 때 한국산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서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산)이 되어 중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한·중 FTA 목적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헤드램프가 ‘중국산’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중 FTA상 중국산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관련성이 클 것이다.

다만, 그 이전에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 자체를 포장하게 된다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제8512호[(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8512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특히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 of all kinds)’로서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 확산램프 ; 무중(霧中) 램프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고 설명돼 있다. 그중 자전거에 사용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는 제8512.20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다.

다만, 자동차 헤드램프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 수입된 상황이고 포장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CTH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판정되려면 누적기준이나 불인정공정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2) 충분가공원칙, 불인정공정기준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각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 규정)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야만 원산지 상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HS Code별 원산지기준이 List로 제시돼 있어 이를 ‘List Rul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기준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공통기준)과 ②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공통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영역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한다. 그중 충분가공원칙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이 수행되어야만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부속서 2-가(부가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FTA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충분가공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 수행의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는 충분히 가공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한·캐나다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등은 ‘불인정공정’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EFTA, 한·EU, 한·튀르키예 FTA 등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표현해 해당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RCEP은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한·중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1.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는 다음의 공정 또는 가공은 그 자체만으로 또는 조합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라.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 러. 동물의 도살, 또는
 -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양 당사국은 그 밖의 공정을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합의할 수 있다.

많은 FTA가 불인정공정기준을 ‘열거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FTA 불인정공정기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충분가공원칙의 개념 및 불인정공정이 도입된 것은 역내가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고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반제품이 아닌 원재료 상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공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인정공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FTA 담당자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보호장치로 활용된다. 즉, 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아닌 재료에 대해 수행된 사소한 가공 작업에 의해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정적 테스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상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이 수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누적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모든 FTA에서는 재료누적을 활용할 수 있고, 일부 협정에서는 공정누적 또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료누적을 활용할 때 한 당사국에서 원산지인 재료가 다른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그 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된 유일한 작업이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면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제품은 결과적으로 원재료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질문 & 답변 사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고순도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에 대해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답한 바 있다.

(3) 누적기준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활용되며, FTA 특혜관세 적용은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이뤄진다. FTA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HS Code별(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일부 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한국산이 되기 위해 ‘국내생산’이 아닌 ‘역내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정을 ‘역내생산원칙’ 그리고 ‘누적’이라고 부른다.

그중 누적(Cumulation)기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을 가져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보는 것을 ‘재료누적’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이라고 한다.

협정별로 재료누적은 모두 인정되지만, 공정누적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누적기준은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기준으로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을 누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산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에 관한 것은 딱히 ‘누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나 공정에 관한 입증은 재료누적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공정과 같은 입증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나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에서는 누적이에 관한 규정으로 “한쪽(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incorporated)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료누적에 관한 규정이다.

(4) 질문 & 답변 사례 해석

일단 한·중 FTA에서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적을 적용해 원산지 상품을 제조하는 국가에서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헤드램프 자체가 한국산인 것처럼 ‘누적’돼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누적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상품 및 재료 모두 누적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FTA에서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하고, 재료란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의 대상이 되는 원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 또는 상품을 말한다.

즉 자동차 헤드램프에 대해 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한다면, 누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한·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한·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중략> ...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한·중 FTA에서는 각 규정에 관한 추가 설명, 특히 ‘단순한’에 대한 추가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단순한’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 제3.7조에서는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등 여러 가지 불인정공정기준에서 ‘단순한’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해석과 관련해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special skills), 기계(machines), 도구(apparatus), 또는 장비(equipment)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하며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 답변에서 포장공정은 협정상 존재하는 몇 가지 포장 규정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지를 확인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단순한 공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포장을 기계로 수행한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에 해당된다면 ‘단순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단순한 공정인지 여부를 논하지 않고 불인정공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정이 ‘단순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EU의 Guidance에서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에 관해 다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U-made wine is imported in bottles into the UK where it is repacked and sent back to the EU. The bottles arrive to the UK in a pallet containing hundreds of bottles and are then packaged into cases of 3 or 6 bottles: this would be an insufficient operation and cumulation with the EU bottles of wine could not be applied. As a consequence the UK origin could not be conferred.

해당 사례에서는 EU에서 만든 와인이 병에 담겨 영국으로 수입돼 재포장된 후 EU로 다시 보내진다. 수백 개 병이 담긴 팔레트로 영국에 도착한 뒤 3개 또는 6개 병 단위로 케이스에 포장되는 상황에서 이는 불충분한 작업으로 간주돼 EU 와인병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영국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안내됐다.

또한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The placing of EU originating watches in jewellery cases in the UK is to be considered as simple and so an insufficient operation. As a consequence cumulation cannot apply, the watches cannot obtain the UK origin and preferences cannot be granted in the EU if exported back there.

The placing in the EU of third country medicaments in bulk into a glass ampoule requires special skills or apparatus going beyond simple packaging - thus it would not be considered an insufficient operation. Therefore, the product specific rules would be met, the EU origin acquired and preferences granted if the medicaments in the ampoules would be exported to the UK.

첫 번째 사례는 영국에서 EU 원산지 시계를 보석 케이스에 넣는 것은 단순한 작업으로 간주되므로 불충분한 작업이며, 결과적으로 누적을 적용할 수 없고, 시계는 영국 원산지를 획득할 수 없으며 EU로 다시 수출될 경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EU에서 제3국의 대량의 의약품을 유리 앰플에 넣는 작업은 단순한 포장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므로 불충분한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품목별 규칙이 충족되고 EU 원산지가 획득되며, 앰플에 든 의약품이 영국으로 수출될 경우 특혜가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단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특수한 기계를 활용해 케이스 또는 상자에 자동차 헤드램프를 넣었다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작업을 넘었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는 제품을 그대로 얻기 위해, 제품이 그 특성(characteristics)이나 속성(properties)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계 없이도 유사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생산 방법이 ‘불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생산 과정, 기계의 사용 여부, 그러한 기계 사용이 제품의 특성이나 속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관세청의 답변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단순 포장공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량의 의약품을 유리 앰플에 담는 것과 같이 단순한 포장을 넘어서는 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 헤드램프라는 완성품을 소분해서 소매판매용으로 구성(포장)하는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누적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를 참고하되 사례별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됐는지, 그에 따라 누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전동스쿠터의 HS Code

모터가 있는 전동스쿠터(electric scooter)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의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에 해당된다면 제8711.6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분류로 ‘모터사이클’에 해당된다면 제8711.60-1000호에,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8711.60-900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71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 ;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수통관 / 꿀 면세통관

건강기능식품 3병과 벌꿀 6병, 총 9병을 해외 직접 구매(직구)하려는데 꿀도 건강기능식품 6병 제한 규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꿀은 기타 농림축수산물로 면세통관 범위 5kg로 확인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 032-454-2121~2/2127~9(민원 담당)

수출 / 소프트웨어 수출신고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관세청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을 CD와 같은 매체에 담아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법」상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서 무체물로 수출할 때는 물품으로서의 이동이 없어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세관의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망(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적 무체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아 세관에 수출신고 할 필요는 없지만, 「대외무역법」상 수출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한국무역협회(1566-5114, webdocu.kita.net)나 한국소프트산업협회(02-2188-6900)에서 수출 확인을 받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기관인 한국무역협회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 고사리의 수입요건

제0710.80-5000호에 분류되는 고사리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0710.80-5000호에 분류되는 '냉동 상태의 고사리'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특허수수료 부과고지의 처분성 및 무효 여부에 관한 판례

이 하 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¹⁾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며,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 및 취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기간 및 제소기간²⁾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하는 판결³⁾은 원고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법원은 ‘특허수수료 납부고지’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특허수수료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을 본안으로서 판단했다.

2. 사건의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특허수수료 산정 등

원고들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피고 산하의 각 세관관서의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 산하 각 관할 세관관서의 세관장은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 한다)에 귀속하는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판매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했고, 위 산정된 특허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다음 표와 같은 형식의 공문 및 납부고지서(다음 표의 공문은 A 세관장이 2017년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보낸 문건들인데, 각 관할 세관관서의 세관장은 위와 같은 형식의 공문

1)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참조)

2)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48 판결(확정)

및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수수료 납부고지를 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송부했다.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고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분(2017. 1. 1. ~ 12. 31.)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붙임1과 같이 납부 고지하오니 기한 내 2018. 3.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10조 및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4. 붙임2 ‘2018년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같은 시행령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납부기한(2018. 3. 31.까지)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납부고지서 검 영수증서 1부(별송) 붙임2 2018년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시 유의사항(별송) 끝.			
세외수입 고지서 검 영수증서			
관세전용납부계좌 :			
회 계 구 분	관세청소관일반회계	납 부 기 한	년 월 일
회 계 년 도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수입 징수관 계좌번호	납부자 번호	납 부 금 액	
※ 수입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전자문서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납부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약이체로는 수입이 되지 않음)			
징수관련번호		수입징수관서	
납부자	성 명	상 호	
	주 소		
과목			
발생사유		관련번호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우체국 및 국고 수납대리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입징수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수일 년 월 일</p>	

2)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대해 산정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전부 납부했다.

나. 관련 법령

■ 舊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관세법」'이라 한다)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중략>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78조(반입금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중략> ...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舊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개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현행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중략>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舊 「관세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1. 제192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 **舊 「관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 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

■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 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 **舊 「관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관세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2. 15.>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⁴⁾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④ 운영인은 법 제174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2024. 9. 30.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과 관련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들은 2017 ~ 2018년에 이미 납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2019년 개정된 「관세법」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초과 납부한 부분을 환급해달라고 이 사건 청구했으나,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통해 다투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

2) 원고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① 세관장에게 특허수수료 부과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는 점(특히 코로나19 시기 금액의 감경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② 舊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기획재정부령 시행규칙에 의해 직접 부과하고 있는 점, ③ 舊 관세법령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의무 성립일과 납부기한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구체적인 특허수수료 금액 산정의 기반이 되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계산 방법이 무엇이든 그 금액 자체는 원고들이 산정해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납부고지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부고지는 관할세관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고, 피고가 법령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한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처분을 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 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법령은 舊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및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로 보이고, 이 규정들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부의무·금액·기한이 별도 처분 개입 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청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반부담금 납부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산하의 세관관서의 세관장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를 했는데, 원고들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원고들에게 현실적·대외적으로 세관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와 관련한 납부고지서는 그 양식의 명칭이 '고지서 겸 영수증서'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 납부고지서는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와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미로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통해 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세관장의 보세판매장 특허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의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처분에 있어 고지행위가 납세의무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는 점을 들면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경우에도 법령을 통해 그 특허수수료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미 확정된 특허수수료에 대해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조세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신고 자체가 납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신고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당연히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舊 「관세법」이 시행되는 때의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은 납부의무자인 원고들이 월 마감 과정을 통해 월별 단순판매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업무일지에 기재해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신고(보고)함으로써 ‘월별 판매금액’을 확정하고, 마지막 달인 12월의 업무일지를 그다음 해 1월 7일까지 세관장에게 신고(보고)함으로써 그 금액의 합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 신고(보고) 외에 특허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별도 신고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특허수수료 산정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월별 판매금액을 신고(보고)하면서 그 연간 합계를 토대로 산정되는 구체적인 특허수수료 납세의무 및 자신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의 액수에 대해 인식하기는 어렵고, 세관장의 현실적인 납부고지 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 및 자신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들이 세관장의 납부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납부고지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처분에서의 고지행위와 이 사건 납부고지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부고지의 효력을 다투고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판매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를 산정해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무효다.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판매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와 같이 징수한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를 초과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舊 관세법령에서 별도로 매출액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편적 규범에 의한 매출액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보편적 규범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매출액 개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舊 관세법령은 ‘매출액’, ‘내용연수’와 같은 회계상 용어를 사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념임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회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 舊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舊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은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 규정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두 매출액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의 ‘매출액’도 舊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2013. 11. 5. 기획재정부령 제374호로 개정되면서 이전에 ‘매 분기 말’이었던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변경했다. 이는 보세관매장 특허를 받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연도의 매출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

라) 피고도舊 관세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마) 관련 법령에서 관할세관에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무권한자의 행정처분이다.

2) 피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부고지에서 특허수수료 산정을 하면서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하자가 없다.

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매출액은 특수한 목적성을 지니고 정의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고, 법령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인(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舊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은 관련 규정 자체가 별도로 규정돼 있고, 그 입법취지도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과 달리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을 특허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보세관매장 운영에 따른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기존의 매 분기 말에서 다음 연도 3. 31.까지로 변경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이 없다.

라) 舊 관세법령 개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에 비춰 볼 때 종전 특허수수료 기준 매출액이 세관신고 매출액(총판매액)이었음은 명백하다.

마) 공법적 관계에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 및 보세관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자는 세관장이므로, 특허수수료 부과행위는 세관장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산하 관세청장이 매출원가를 제외하지 아니한 세관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판매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로 납입하라고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1)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의 ‘매출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라는 별도의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는 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②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매출액’을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③ 「관세법 시행규칙」의 모법에 해당하는 舊 「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현행 「관세법」 제176조의2 제7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다)은 그 도입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9년 개정 「관세법」 시행 전까지 위 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에 관한 보고’는 ‘매출원가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의 ‘매출액’은 ‘매출원가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5호는 2015. 11. 6. 제정됐는데, K-IFRS 제1115호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고객에게 받을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이라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K-IFRS에 따른 매출액이 판매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은 2013. 11. 5. 신설된 규정이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은 그 도입 당시부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도입 당시에 제정되지도 않은 K-IFRS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시행규칙이 매출액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헌법재판소는 2019년 개정 「관세법」 시행 이전에 舊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530 결정).

이 결정의 심리과정에서 이 결정의 청구인들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구체적 기준은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실제 얻은 영업이익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에서 판매비(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과 같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와 일반 관리비(임차료, 건물의 보험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업의 관리와 유지 및 일반 사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허수수료 기준이 결정되게 되고, 이는 보세판매장의 경영 상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특허수수료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한다면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비춰 보더라도 ‘매출원가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다른 판매장 특허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매출원가를 제외하지 않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4) 2019년 개정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에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부분이 도입됐는데, 이 규정이 개정될 당시의 ‘기획재정위원회 2019.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와 제371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8호’ 등에 비춰 볼 때 舊 「관세법」에 따른 특허수수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은 ‘세관신고 매출액’임을 전제하에서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개정 「관세법」과 같이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해석해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특허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입법자 또한 종전 특허수수료 기준 매출액은 세관신고 매출액(총판매액)으로 해석했고, 2019년 개정 「관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부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의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는 모두 2013. 11. 5. 신설된 규정이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은 그 도입 당시부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2013. 11. 5. 시행된 舊 「관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후 「관세법 시행령」이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면서 제19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임을 명기해 매출액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연혁에 비춰 볼 때 「관세법 시행령」상의 매출액을 「관세법 시행규칙」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상의 매출액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관세법 시행규칙」의 쟁점 매출액은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두 매출액의 용도와 입법목적이 다르고,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 쟁점 매출액을 시행령상의 매출액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한다면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의 매출액을 舊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관세법 시행규칙」은 2013. 11. 5. 기획재정부령 제374호로 개정되면서 이전에 ‘매 분기 말’이었던 납부기한이 ‘다음연도 3. 31.’로 변경된 것이 사실이나, 이 개정 이유가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기 종료일(통상 12월 31일)

부터 3개월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뤄지는 외부감사는 3월 안에 종료되므로 舊 「관세법 시행규칙」의 ‘다음 연도 3. 31.’이라는 문언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舊 「관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의7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설명대로라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까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舊 「관세법 시행규칙」과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舊 「관세법 시행규칙」의 ‘다음 연도 3. 31.’이라는 문언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정부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비춰 볼 때 2019년 개정 「관세법」으로 특허수수료 부과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이 시행된 이후, 위와 같은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는 내용을 4개월 이내로 변경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관세법」 제176조의2 제7항),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상의 납부기한도 ‘다음연도 4. 30.’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납부기한을 ‘다음연도 3. 31.’로 정했던 것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7)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 별도의 행정청에 이에 따른 특허수수료를 부여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세관장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고지 권한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세관장이 자신이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보세판매장 특허부여권에 부수해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6조 등을 위반해 이 사건 납부고지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절차법」 제21조⁵⁾, 제26조⁶⁾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5)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6)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7)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및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인데, 舊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부고지는 이에 따라 산정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에 해당되는 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⁸⁾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로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 산하 관세청장이 매출액을 기업회계상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될 금액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로 납입하라고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

8)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어

대상판결은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고지는 행정청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납부의 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후, ②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음을 전제로 당연무효 해당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판단했고, ③ 해당 관세법령 조문의 문리 해석 및 개정 연혁,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국회 검토 내용,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5호의 개정 시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세관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산정해 고지한 납부고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④ 이에 더해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내용 중 특히 ‘매출액’의 해석과 관련해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 법 제정의 목적·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 개정 과정 및 국회의사록·정부위원 등의 설명을 토대로 하는 연혁적 해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점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입증책임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⁹⁾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판결 등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드론의 품목분류

최민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I.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은 전투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다. 특히 드론은 정찰, 감시, 공격, 방어,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군사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전투 방식과 달리 드론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쟁에서 드론은 특히 정찰 및 감시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소규모 부대에서도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포병이나 미사일 공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직접적인 공격무기로도 사용된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수류탄이나 폭발물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러시아군 또한 자폭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최근 며칠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전을 펼쳤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 드론(무인기) 80대 이상을 발사했는데, 일부는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드론 140대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의 공격무기화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다. 아울러 드론은 전자전 및 포격과 결합해 전쟁터에서 적군을 제압하는 효과적인 방어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이 증명됐다. 드론은 전쟁 수행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냈다. 스코틀랜드 소재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필립스 오브라이언 전쟁학 교수는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쟁 수행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 인해 전쟁터가 훨씬 더 들여다보기 쉬워졌다”는 설명이다.

즉 정찰용 드론을 내보내면 전반적인 전선의 병력 움직임이나 공격 태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목표물을 발견하면 그 위치 좌표를 지휘 센터로 전송해 포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목표물 발견부터 타격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군사 용어로 ‘킬 체인’이라고 한다면서, 드론을 통해 킬 체인이 훨씬 더 짧아졌다고 덧붙였다. “깊이 숨겨진 목표물이 아닌 이상 모든 게 쉽게 발각된다. 즉 탱크 등의 장갑차가 대규모로 공격당하지 않고 진격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드론은 최전선에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두루두루 사용된다. 아울러 공격용 드론은 포탄과 함께 적을 직접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만으로 러시아의 탱크 부대 진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 전력이 있다.”

※ 출처: BBC 뉴스 코리아

이번 호에서는 드론에 대해 알아보고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의 품목분류를 알아보겠다.

● 여러 종류의 드론 ●



농업용 드론



택배용 드론



완구용 드론



전쟁용 드론

II. 드론

드론은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항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스스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드론은 군사·산업·상업·취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하고 다기능화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제2조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들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드,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드론의 특징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리모컨, 스마트폰 앱,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작하거나 GPS 기반의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비행기 형태의 고정익

드론, 헬리콥터 형태의 회전식 드론 그리고 혼합형 드론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크기는 초소형 드론부터 대형 군사용 드론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드론에는 다양한 센서와 기능들이 탑재되며 주요한 구성요소는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 야간 및 열 감지를 위한 적외선 센서, 정확한 위치 인식 및 균형 유지를 위한 GPS 및 자이로스코프, 장애물 회피 및 자동 경로 설정을 위한 AI 및 머신러닝 기능이 있다.

□ 드론의 구성 요소

드론은 기본적으로 비행을 위한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기체 : 드론의 뼈대 역할을 하며 프로펠러,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탄소섬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제작한다.

구동장치 : 구동장치에는 모터와 프로펠러가 있다. 일반적으로 브러시리스 모터가 사용되며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 프로펠러는 공기를 밀어 드론이 이륙, 비행, 정지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프로펠러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비행 성능이 달라진다.

배터리 및 전력공급 시스템 : 가볍고 높은 전력밀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동력의 역할이므로 주로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된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 짧아 여러 개의 배터리를 교체하며 사용한다. 배터리에서 나온 전력을 모터, 컨트롤러, 카메라 등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전력분배장치가 필요하다.

비행 제어 시스템 :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비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종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에 자세 안정화를 위한 자이로스코프, 움직임 감지를 위한 가속도 센서, 고도 센서 등이 포함돼 있다.

GPS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 위성신호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드론이 자동 비행하고 복귀하는 등 자동항법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외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거나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기능에 필수다.

통신 및 제어시스템 : 기체의 방향과 속도, 높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기가 필요하며 조종기는 2.4GHz 또는 5.8GHz 주파수를 사용해 드론과 무선으로 통신한다. 조종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모터와 비행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수신기가 있으며, 드론의 배터리 상태, 위치 정보, 고도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스마트폰 앱이나 지상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텔레메트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카메라 및 영상 전송시스템 : 카메라의 안정화 장치로 짐벌(Gimbal)이 필요하며 드론이 기울어

지거나 흔들릴 때도 카메라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흔들림 없는 촬영을 위해서는 짐벌과 함께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하다. 드론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종기, 스마트폰, FPV(First Person View) 고글로 전송해 실시간 조종이 가능하게 FPV 시스템이 필요하다.

센서 시스템 : 드론의 기울기와 움직임을 감지해 균형을 유지해 주는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도 센서, 공기압을 이용해 고도를 측정하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고도센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물 감지 센서, 지형을 감지해 실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비전센서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및 자동비행 시스템 : 미리 설정한 경로를 자동으로 비행하도록 도움을 주며, 현재는 장애물 자동회피, 사람 및 사물 인식, 자율 비행 등 AI 및 머신러닝을 적용해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 드론의 구성요소 간단 정리 ●

구분	구성요소	내용
기체	비행체	기체 자체와 기체에 실리는 추진, 연료, 전기, 항법 장치를 포함
	임무 탑재체	카메라, 레이더, 중계기 등 비행체에 탑재되는 장비
	이착륙 장치	지상으로부터 발사/이륙 및 착륙/회수하는 데 필요한 장치
지상장비	지상통제장치	비행체 및 탑재체 조종, 통제, 영상 데이터 수신 등 운용장비
	지상 자원	드론 운용과 유지보수 위해 소요되는 일련의 지상 지원 설비/인력
	데이터 링크	비행체 상태 정보, 임무 정보, 비행체와 지상 간의 통신 요소

□ 드론의 활용 분야

드론은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탐색하거나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에 따라 군사, 촬영, 물류, 농업, 건설, 환경, 재난 구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군사 및 보안 : 드론은 정찰, 감시, 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기존의 유인 항공기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도구로 자리 잡았다. 경찰과 소방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 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촬영 및 미디어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보편화돼 있다. 영화,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들도 드론을 활용해 고품질 영상을 제작한다.

물류 및 배송 산업 : 드론의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분야다. 아마존, UPS 등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긴급 의료 물품이나 구호물자를 신속하

● 여러 종류의 군사용 전투 드론 ●



튀르키예 Aksungur(출처 : 위키피디아)



독일 스페인 EADS Barracuda(출처 : 위키피디아)



미국 XQ-58 발키리(출처 : 위키피디아)



미국 MQ-9 A Reaper(출처 : 제너럴 아토믹스)

게 전달하는 데도 사용된다.

건설 및 인프라 점검 : 건설 현장에서 3D Mapping을 통해 정밀한 설계를 지원하고 고층 건물이나 교량, 발전소 같은 위험 지역의 점검을 드론으로 수행해 안전성을 높인다.

환경 및 재난관리 : 산불 감시, 해양오염 조사, 멸종위기 동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에 활용되며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교통 및 재난관리 : 도로 교통량을 분석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II. 경합세번

다음은 종류에 따른 드론의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1. 짐벌(GIMBAL)

드론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 X·Y·Z축(3축)으로 작동하도록 장착된 모터 3개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된 물품의 제8479호 해당 여부

2. 드론

전용 무선조종기로 조종하는 4개의 Rotor Blade(회전날개)를 갖춘 드론으로 와이파이 카메라가 장착돼 공중에서 비행하며 정지영상 및 동영상 촬영 수행이 가능한 물품의 품목분류

3. 드론용 전파방해기

복합노이즈 발생반, 광대역RF반, GPS안테나반, S/C대역통합안테나반, 배터리반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해 드론과 조종자 간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4. 농업용 드론

수도작, 전작, 과수원 등 농가에서 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비행부, 살포부,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됨.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해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의 품목분류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기본 8%
20 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기본 8%
30 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기본 8%
40 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기본 8%
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 0000	증발식 에어컨	기본 8%
7	탑승교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90	부분품	
9090	기타	기본 8%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품목번호	품명	세율
50	송신기기	
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9	기타	
1000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 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	기본 0%
2000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	기본 0%
3000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기본 0%
9000	기타	기본 0%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10 0000	입자가속기	기본 8%
20 0000	신호발생기	기본 8%
30	전기도금융·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0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70	그 밖의 기기	
90	기타	
9090	기타	기본 8%
90	부분품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1	헬리콥터	
2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000	프로펠러식	양허 0%
2000	터보프로펠러식	양허 0%
3000	터보제트식	양허 0%
9000	기타	양허 0%
3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IV.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제8479호 해설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 (i)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iii)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구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8525호 용어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 제85류 소호주

1. 소호 제8525.81호에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5.82호에서 방사선 경화나 내(耐)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3 Gy(실리콘)[5 × 106 RAD (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
4.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분류한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재충전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 제8525호 해설서

(A)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 분류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電磁波)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유선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의 송신기기
- (2) 방송을 수신·재송신하며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계용 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용 기기를 포함한다)
- (3) 안테나와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나 외부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

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기

(4) 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기(예 : 떨어져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 전하(轉荷)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이나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 웹캠(webcam)).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트래블링(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8호).

텔레비전 카메라의 원거리 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초점 조정 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37호).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로부터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 장치나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나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 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 : 이러한 것은 하전입자(전자·양자 등)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다. ... <중략> ...
-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 <중략> ...
- (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식품·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물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 <중략> ...
-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 : 녹음기와 함께 사용한다.
- (6) 전열용 저항체를 부착한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 <중략> ...
-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 ... <중략> ...
- (8) 광산용의 전기식폭파기(electrical mine detonator) ... <중략> ...
-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
- (11)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 <중략> ...
- (12) 자외선 조사(照射)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
- (13)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 공업용·구내의 오존화용)
- (14) 예를 들면, 손목시계·컵·인사용 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물품이나 그 밖의 다른 물품 속에 결합되는 전자 뮤직컬 모듈 ... <중략> ...
- (15)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라이저(electric fence energiser)
- (16)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
- (17)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 :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판(plate)·패널(panel)의 상태로 전자발광물질(예 : 황화아연)을 기본재료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 층 사이에 위치한다.
- (18) 디지털 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비행기록기 : flight recorder) : 내화성(耐火性)을 갖추고 충격에 강한 형태로서 특정 비행 중의 기록을 연속 기록하는 전자장치이다.

□ 관세율표 제8802호의 용어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 제8802호 해설서

- (1) 기계 구동식의 중(重)항공기(heavier-than-air aircraft) : 이 그룹에는 비행기(aeroplane)(육상비행기·수상비행기·수륙양용기)·자이로플레인(gyroplane)[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헬리콥터(helicopter)[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여객 또는 화물 운송용·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용이나 그 밖의 과학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주행 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우주선(spacecraft)
 (3) 우주선 발사체(spacecraft launch vehicle)
 (4) 서보비틀 발사체(suborbital launch vehicle)

■ 제16부 주 제1호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 다.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 <중략> …
-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 카. 제17부의 물품
- 타. 제90류의 물품
-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 거. 제95류의 물품
-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또는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후략>

V. 품목분류

1. 짐벌(GIMBAL)

결정 세번	제8479.89-9099호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 X·Y·Z축(3축)으로 작동하도록 장착된 모터 3개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션 카메라(ex GoPro)를 신청물품과 함께 드론에 장착해 드론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 드론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 컨트롤러에 장착돼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계산해 X·Y·Z축에 장착돼 있는 모터를 작동시켜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p> <p>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설하고 있음.</p> <p>본 건 물품은 액션 카메라와 함께 결합돼 드론에 장착되는 것으로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7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p>

2. 드론

결정 세번	제8525.89-2000호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무선조종기로 조종하는 4개의 Rotor Blade(회전날개)를 갖춘 드론으로, 와이파이 카메라가 장착돼 공중에서 비행하며 정지영상 및 동영상 촬영 수행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 촬영하면서 무선조종기로 조종(메모리 카드 사용 불가능) - 드론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 움직임을 컨트롤러에 장착돼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계산해 X·Y·Z축에 장착돼 있는 모터를 작동시켜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 <중략>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p> <p>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p>

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포함하며,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해설함.

본 물품은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카메라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없고 카메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3. 드론용 전파방해기

결정 세번 제8543.70-9090호

- 물품 개요**
- 복합노이즈 발생반, 광대역RF반, GPS안테나반, S/C대역통합안테나반, 배터리반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해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 용도 : 경찰, 군, 정부 기관등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제압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① 복합노이즈 발생반
전파방해를 하기 위한 노이즈를 생성 및 생성된 노이즈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 ② 광대역RF반
L(1.5GHz), S(2.4GHz), C(5.8GHz) 대역 주파수를 생성하는 기능 및 생성된 주파수를 아날로그 노이즈와 합성하고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
 - ③ 배터리반
전파방해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배터리로 Li-ion 3.6V 4개가 사용됨
 - ④ GPS안테나반
광대역RF반에서 증폭된 L(1.5GHz) 대역의 신호를 공기 중에 방사하는 기능
 - ⑤ S/C대역통합안테나반
광대역RF반에서 증폭된 S(2.4GHz), C(5.8GHz) 대역의 신호를 공기중에 방사하는 기능
- 작동 원리**
- 3가지 주파수대역에 대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해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함.
 - 통신을 방해함으로써 드론은 비행을 하지 못하거나, 착륙을 함.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중략> …

결정 사유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4. 농업용 드론

결정 세번 제8802.20-1000호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수도작, 전작, 과수원 등 농가에서 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비행부, 살포부,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됨.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해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
 - 주요 제원
 - 기체 크기 : 1,670 x 1,440 x 470mm, 접었을 때 600 x 600 x 1,160mm
 - 기체중량(배터리 포함) : 21.2kg
 - 이륙중량 : 36.5kg
 - 탑재장치 : 15ℓ
 - 조종방식 : 무선원격조종(각종 모드 가능)
 - 비행속도 : 0 ~ 12m/s
 - 최대 비행거리 : 4,000m(거리제한 가능)
 - 최대 비행고도 : 50m(고도제한 50m)
 - 약제 분사폭 : 4 ~ 6m
 - 약제 분사량 : 0.2 ~ 2ℓ
 - 비행 방식 : 수동/반자동/자세제어/GPS자동/자동제어/프로그래밍자동/좌표비행
 - 주요 구조
 - 비행부와 살포부, 리모컨으로 구성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돼 있음.
 본 건 물품은 분사장치가 결합돼 있는 기체, 무선조정기가 함께 조합돼 원격제어 비행 기능을 활용해 약제를 살포하는 드론으로서,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 물품에 충족해 주요 구성 물품인 주기기인 본체(기체)에 따라 분류함.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부를 우선 검토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기계구동식의 중항공기 : 이 그룹에는 비행기(육상비행기·수상비행기 및 수륙양용기)·자이로플레인(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타를 한 개 이상 갖춘 것)·헬리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목적·여객 또는 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agricultural work)·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 용 또는 기타 과학용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해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으로서 프로펠러식의 영농용의 항공기(자체중량 2,000kg 이하)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8802.20-100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홉(Hop) 분류 사례 - 2024년도 7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흥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홉, 효모, 물은 각각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홉은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홉은 맥주 특유의 쓴맛을 내며, 자몽, 귤,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부터 베리, 망고, 블랙 커런트 같은 과일향, 그리고 제라늄, 라일락, 아카시아 등의 꽃향기까지 다양한 아로마를 만들어 낸다. 또한, 솔잎이나 후추 같은 스파이시한 향도 더할 수 있어 맥주의 풍미를 다채롭게 만든다. 맥주의 맛과 향뿐만 아니라 양조 과정과 맥주를 보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홉은 맥주의 품질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천연 항균제로 작용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보존성을 높이며, 양조 과정에서 맥즙의 콜로이드 안정성을 높여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거품의 조밀도와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해 맥주를 한층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홉은 위도 북위 35 ~ 55도, 남위 35 ~ 55도 지역에서 잘 자라며, 온난한 기후와 충분한 강수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폭우나 강풍은 재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물학적으로 홉(Humulus lupulus)은 대마과(Cannabaceae)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암수 그루가 따로 있다. 맥주 원료로 쓰이는 홉 열매는 암그루에서만 나오며, 경작 시에는 수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생육을 위해 뿌리줄기당 세 개의 싹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려야 한다.

홉의 핵심 성분은 암술 가운데 있는 노란색 알갱이 루플린(Lupulin)이다. 루플린에는 맥주의 쓴맛과 아로마를 결정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수확한 홉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펠릿, 추출물, 분말, 오일 등으로 가공해 보관 및 유통된다. 이렇게 가공된 홉은 생 홉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수율이 높으며, 제품 생산에 표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존 기간을 월등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크래프트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홉의 개성이 강한 맥주가 주목받고 있다. 홉의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홉 사용량을 늘리거나, 발효 후반에 홉을 추가하는 ‘드라이 홉핑(Dry Hopping)’ 기법을 활용하는 양조 방식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홉은 오랫동안 다양한 약재로도 활용돼 왔다. 1300 ~ 1500년경부터 의학적 효능이 주목받았으며, 소화 개선, 이뇨 작용, 담즙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영국 왕 조지 3세가 홉을 심신 안정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과거에는 탈모 치료나 피부 미용을 위한 목욕에도 활용됐다.

홉의 약용 효과는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랍권에서는 홉이 혈액을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 데 사용됐으며, 북미에서는 진정제, 항류머티즘제, 진통제, 여성질환 및 신장질환 치료제로 활용됐다.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권에서도 약재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그동안 맥주의 맥아 함량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홉은 맥주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의학적으로도 다양한 효능을 가진 홉,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번 호에서는 홉 가루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홉(학명 : Humulus Lupulus)을 건조해 분쇄한 연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1210.20-1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1210호에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이 분류되며, 제1210.20-1000호에는 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 모양의 ‘홉(Hop)’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홉(hop cone) : 홉 식물[후물루스 루플루스(Humulus lupulus)]의 비늘 같은 솔방울 모양으로 꼬리 모양 꽃차례(catkins) 또는 꽃이다. 이들은 주로 양조공업에 있어서 맥주에 향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나 의약용으로도 사용한다. 홉은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홉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0.20-1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류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호	(제1210호)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HSK	(제1210.20-1000호) 홉(hop cones)[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1210.20-1000호
품명	Hop cone, Dried ; Hop Cone Powdered
물품 설명	- 홉(학명 : Humulus Lupulus)을 건조해 분쇄한 연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관련
이미지



남성용 방한복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의복은 몸과 외모를 보호하거나 꾸미는 것들의 총칭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꼽힌다.

의복은 관세율표에서 편물제 의류일 경우 제61류, 비편물제 의류일 경우 제62류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의복과 관련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방한용 회색계 긴소매 상의로 ‘여성용 방한용 외투’인 제 6202.40-109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1.40호에 ‘기타 :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섹스로 남성·여성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옷들이 많아 위 규정에 따라 여성용 의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명백히 남성용·여성용이 구분되는 옷들은 해당 세번으로 분류해야 한다.

해당 물품의 경우 전면부가 왼편에서 오른편 위로 잠기게 돼 있어 남성용이 명백한 옷이었다.

다음과 같이 전면부가 파스너 형태로 돼 남성용·여성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나 명백히 디자인이 여성용으로 구분될 때 제6202호에 분류할 수 있다.

남성용·여성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면부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잡거나 명백히 여성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40-1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LADIES JACKET OF SYNTHETIC FIBRES	6202.40-1090 (E1 6.5%)	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6201.40-1090 (A 13%)

“불 나면 안 열려” 해외 직구 도어록 안전주의보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는 일부 디지털 도어록 제품 중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대표적인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몇 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리튬이차전지가 내장된 제품은 모두 발화·폭발했으며, 한 제품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전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현관문에 장착되는 것으로 열쇠 대신 비밀번호,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등을 잠금장치로 사용하는 제품을 일컫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하지만, 평가 대상이었던 몇 개 제품은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었다. 리튬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제품은 시험 기준 온도인 270℃보다 낮은 170 ~ 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이러한 조치가 완벽하고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에서는 재래식의 것이든 디지털식의 것이든 비금속(base metal)재의 자물쇠(padlock)는 제8301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에 분류된다.

해당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장치 ... <중략> ...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 ... <중략> ...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1호_2025.3.10.

최신개정법령

훈령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공고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입법예고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령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관세청훈령 제2391호, 2025.3.4.)

◇ 개정이유 ◇

-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25.2.28.)에 따른 변동 사항을 훈령에 반영

◇ 개정내용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규정 조항 삭제(제6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1별표5 제1호 라목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용어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다른 용어 정비 등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 제3항 및 제5항	수개	여러 개	법제처 권고
별지 제3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본문 용어와 서식 명일치

- 인용된 행정규칙명 정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과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되어 인용 제명 정비(제8조 제4항)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고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72호, 2025.3.7.)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mm 이하이면서, 폭이 2,000mm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창 (Schuang InternationalDevelopment Ltd.) 나. STX저펜 (STXJapan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Daekyung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	

라.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mosf1204@korea.kr

※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호, 2025.3.4.)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4년 12월 1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 조사범위 :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

*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 :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일본) JFE Shoji Corporation, Nippon Steel Trading Corporation, Sumitomo Corporation Global Metals Co., Ltd., Dongkuk Corporation, Seah Japan Co., Ltd., Young Steel Co., Ltd.
- (중국) Benxi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Howa Trading Co., Ltd.,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1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 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2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입법예고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2호, 2017.12.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3.24.(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2호, '17. 12. 29.)

2. 개정사유

- 해당고시 본문과의 정합성 보안을 위해 고시제명 등을 정비하고,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고시에 맞추어 조문 정비
-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절차 및 수출심사 기준 명확화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신설
- 외부기관으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정합성 보안을 위한 고시 정비**
(고시제명, 제1조, 제9조 개정)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를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로 고시제명 변경, 목적·준용 규정에서 수입 관련내용 삭제
- **「대외무역법」등에 맞도록 조문 정비**(제1조~제4조, 제6조~제8조 개정)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 “상황허가 대상”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 관세청 타고시제명 변경사항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

* ① 「관세법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 「관세법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②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③ 고발(송치)의뢰 → 조사의뢰

- **신고인의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절차 명확화**(제3조 개정)
 - 전략물자 등 수출신고 전에 갖춰야 할 요건*과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요건승인번호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
 - * 수출허가 → 수출허가, 상황허가 또는 허가면제
 - ** 전략물자허가번호 →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허가면제) 판정번호

- **세관직원의 전략물자 등 수출심사 절차 보완**(제4조 개정)
 -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전략물자 등 수출허가(허가면제 포함) 이행 여부 외에 통제대상 물품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구체화
 - 세관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를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근거 신설**(제4조 개정, 별표 신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서류심사 또는 현품검사 선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 * 「대외무역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을 구축하여 전략물자 판정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정 능력을 갖춘 기업

< [별표] 통관절차상의 혜택(제4조 제3항 관련) 기준 신설 >

현 행	개 정			
<신 설>	혜택 기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	AA	AAA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 현행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지정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 현행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검사 비율에서 우측 지정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 수출통제품목 선별 이외 나머지 선별기준은 제외대상이 아님

□ 허가기관으로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제5조 개정)

- 관세청이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전락물자 등 허가기관이 「관세법」*에 따라 통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

* 제116조(비밀유지)제1항제7호 :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제간 세관 협력 절차 정비(제8조 개정)

- 해외 관세당국과의 원활한 전락물자 등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별도의 관세청장의 승인 절차 삭제 및 관세청장의 재량 부여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 남우현 사무관(042-481-7841)
권기범 관세행정관(042-481-7895)
- 제출기한 : 2025.03.24.
- 제출방법 : 이메일(kkbses@korea.kr)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4, '24.12.3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3.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4호 '24.12.31.)

2. 개정사유

- WCO 제7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4차 HS위원회 결정)
 - 염수에 보존 처리하여 잘게 썬 채소(착채)(제2005.99호), 꼬투리가 있는 냉동한 미성숙 대두(제2008.19호), 강화 안전유리로 만든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1호), 빈 음료 용기 자동 반납기(제8479.89호), RF Generator(제8543.70호), 어린이용 전동 스쿠터(제9503.00호) 등 23개 품목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박선민 사무관(042-481-7642)
임덕호 주무관(042-481-7641)
- 제출기한 : 2025.03.26.
-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lab@korea.kr)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2025년 2월 발간 —



5,160p.(상·하권 1세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한·필리핀FTA, 2025 HSK·WTO 일부개정 등
올해 개정된 세율과 고시를 한 눈에!

발간기념 **10% 할인!!!**

±20,800원 → **108,000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도서구매문의 02)3416-5112 | 온라인구매처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